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 외부평가자(전문의) 평가항목

2019.02.14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설명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임상위원회

신경석 (한국보건환경연구소)

알 림

- 본 자료는 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 항목 중 외부전문가(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 발표할 때 사용된 자료입니다.
- 2017년 기관평가에서 합의되고 적용된 평가기준을 안내했습니다.
- 2019년 평가가 시작되기 전, 기존 평가에서 지적 받았던 부분과 확진검사 등 변경된 국민건강검진과 관련, 평가기준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차 례

1. 지금까지의 경과
2. 총론
3. 각론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1. 지금까지의 특검기관평가

a. 기관평가 연혁?
b. 기존 평가 결과 요약
c. 기타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a. 기관평가 연혁?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08 [안전보건연구원] 특수건강진단 질 제고방안 연구 (박정선)

2009 [안전보건연구원] 특검기관의 질 관리기준 및 평가 매뉴얼 개발 (김규상)

2009.0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제 106조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등) 신설

2011.12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1-54호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 전부 개정

->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2013.02 [안전보건공단]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설명회 - 2.22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

2013.02 [한특협] 특수건강진단 책임의사 연수교육 - 2.26 **기관평가 실시 가이드**

2013.05 [안전보건공단] 2013년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실시 공고**

2013.06~ 기관평가 시행

2014.01 [고용노동부]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 **결과 공표**

2015 특검기관평가

2017 특검기관평가 - 2019년 특검기관평가 가안 발표

2019 특검기관평가 - **개선된 평가 항목 도입**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a. 기관평가 연혁? – 기존 평가항목 근간 자료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설명회

Ⅲ 특수건강진단기관 운영가이드

※ 동 가이드는 201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시범평가 및 2012년 추가 개정 도구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초로 최근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및 정도관리 관련 자료를 반영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이 2017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 참고 및 활용토록 개발되었습니다.

※ 동 가이드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칙 및 자료, 법규, 고시,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차례

제1부 특수건강진단 실시 가이드

Ⅰ. 사전조사 단계 ······ 151
1. 사전조사 절차·내용 및 방법 ······ 151
2. 특수건강진단 기록지 작성 및 활용 방법(문진과 이학적 검사) ······ 173

Ⅱ. 검진 단계 ······ 188
1.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방법 및 주의 사항 ······ 188
2. 폐활량검사에 대한 적합성·재현성 평가방법 및 검사설문지 내용·작성 방법 ··· 193
3. 청력검사 검진대상자 선정 등 사전 준비사항 및 청력검사 방법 ······ 205
4.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시기 및 방법 ······ 218
5. 시료 채취 후 이동·보관 및 의뢰방법(소변, 혈액, 객담 등) ······ 225

Ⅲ. 건강진단결과 판정 및 사후관리 단계 ······ 227
1.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선정방법 ······ 227
2. 특수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업무관련성 및 판정방법 ······ 234
3.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유소견자 사후관리 방법 ······ 253

Ⅳ. 관련 기록물 보관 및 결과보고 단계 ······ 258
1. 특수건강진단 결과보고 및 사업장 안내방법 ······ 258

b. 기존 평가 결과 -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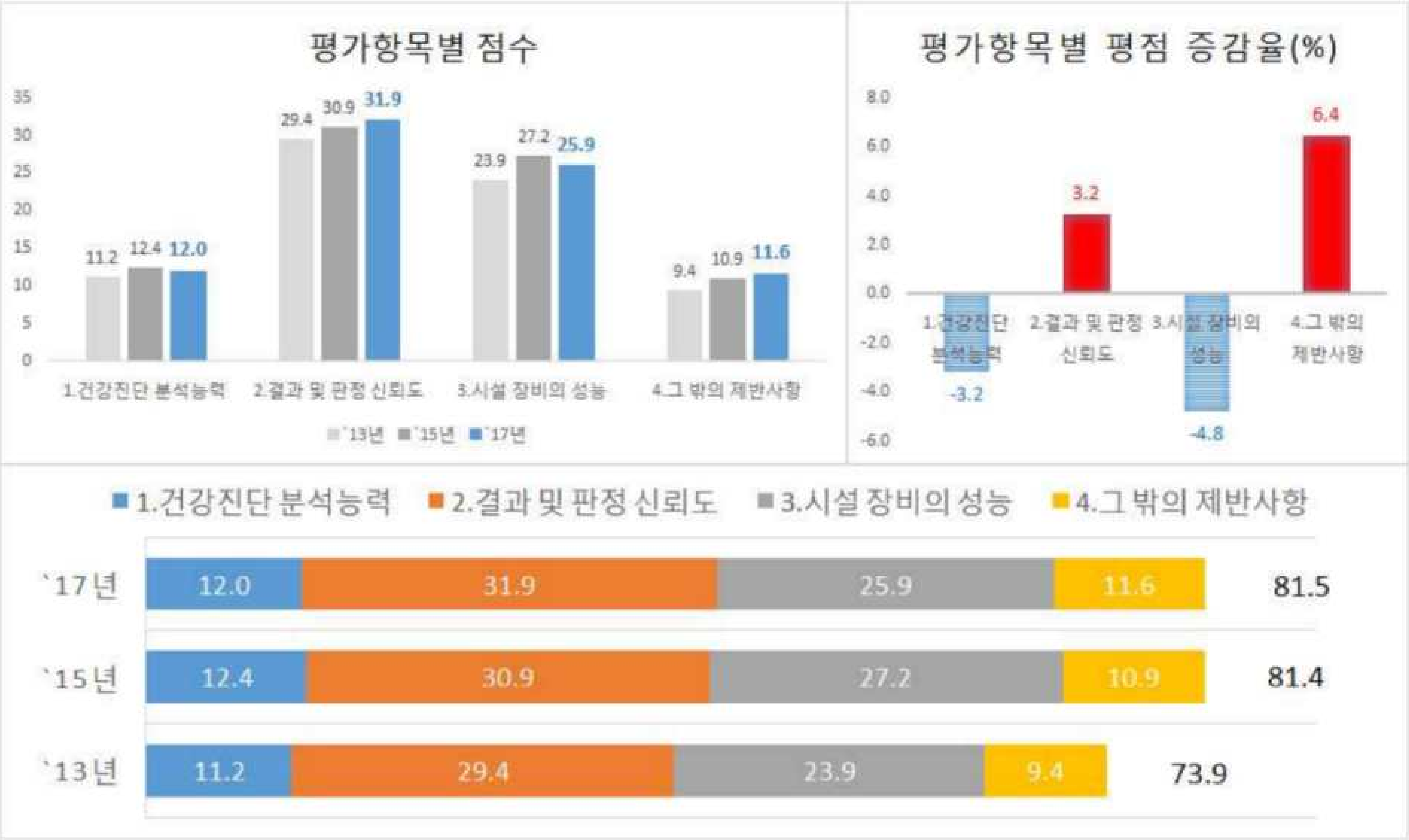

평가항목별 점수
35
30
25
20
15
10
5
0
11.2
12.4
12.0
29.4
30.9
31.9
23.9
27.2
25.9
9.4
10.9
11.6
1.건강진단 분석능력
2.결과 및 판정 신뢰도
3.시설 장비의 성능
4.그 밖의 제반사항
`13년
`15년
`17년
평가항목별 평점 증감율(%)
8.0
6.0
4.0
2.0
0.0
-2.0
-4.0
-6.0
-3.2
3.2
-4.8
6.4
1.건강진단 분석능력
2.결과 및 판정 신뢰도
3.시설 장비의 성능
4.그 밖의 제반사항
1.건강진단 분석능력
2.결과 및 판정 신뢰도
3.시설 장비의 성능
4.그 밖의 제반사항
`17년
12.0
31.9
25.9
11.6
81.5
`15년
12.4
30.9
27.2
10.9
81.4
`13년
11.2
29.4
23.9
9.4
73.9

b. 기존 평가 결과 – 연속 vs 신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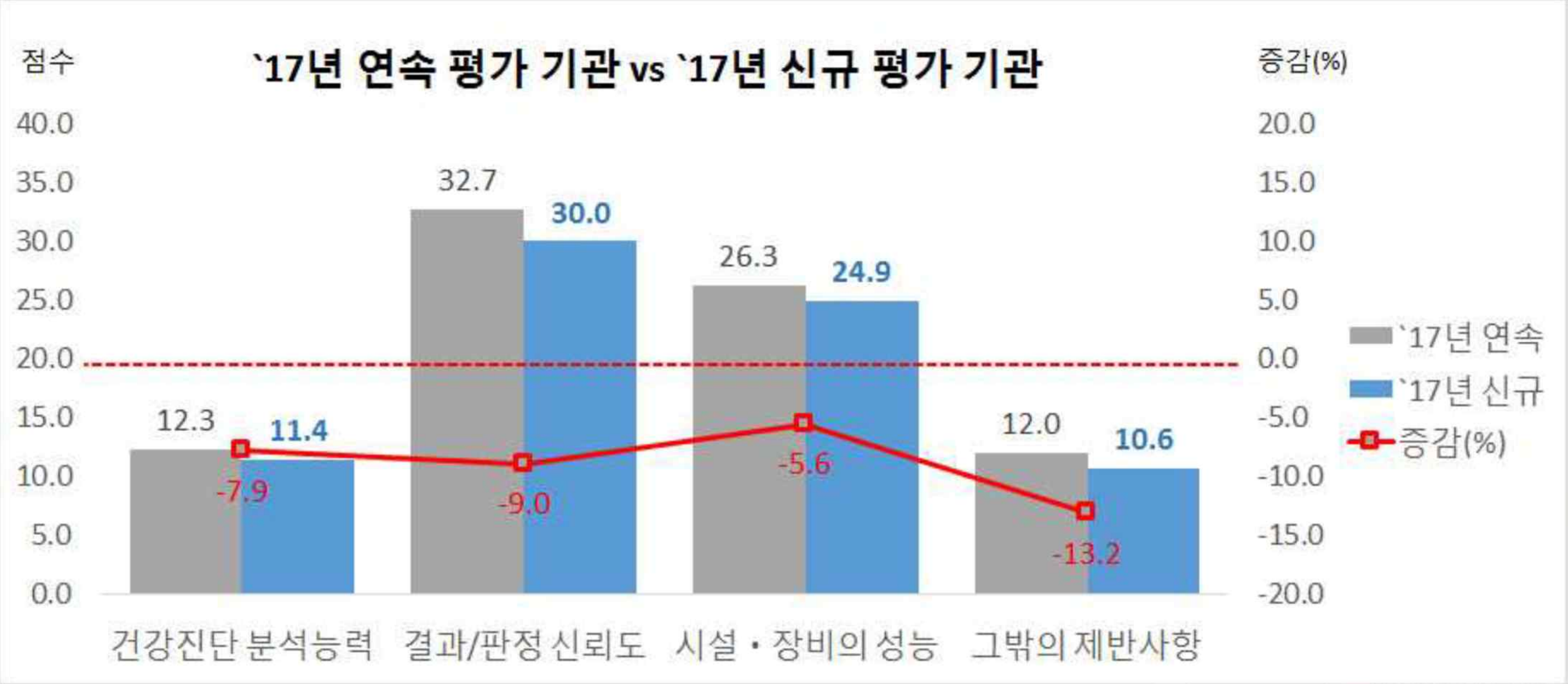

b. 기존 평가 결과 – 전문의 평가항목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구분	세부평가항목	평가결과 (개소)			100점 환산평균			'15 대비 증감
		A	B	C	`13년	`15년	`17년	
2.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절차 수립	98	73	35	73.8	74.1	72.2	-1.8
2.2	사전조사절차 실행여부	92	82	32	57.8	66.7	71.7	5.0
2.3	문진의 적정성	106	72	28	63.6	76.3	75.1	-1.2
2.4	이학적 검사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140	48	18	67.4	77.5	83.7	6.2
2.5	청력검사 불일치성	66	37	56	51.4	56.5	62.5	6.0
2.6	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	148	43	14	77.7	73.8	86.1	12.3
2.7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지침서	129	53	24	79.0	85.7	80.4	-5.3
2.8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 적정성	108	81	17	77.4	77.5	77.7	0.1
2.9	건강진단 결과 판정방법의 적정성	121	66	19	80.1	79.3	79.8	0.5
2.10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138	55	13	79.0	81.2	84.3	3.0
2.11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150	46	10	83.2	85.4	87.2	1.8
2.12	검사항목의 적절성	167	27	12	88.1	94.8	90.1	-4.7
2.13	유소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설명의 적절성	135	49	22	75.4	74.3	81.9	7.6

2. 총론

a. 개정된 기관평가 항목

b. 항목별 준비사항

c. 각론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a. 개정된 평가 항목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년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항목

합계 1,000점 +∝		신규	260점 (9문항)
A	운영체계 (400점)	기존	740점 (73문항)
		1. 건강진단 분석능력	150점 → **115점** (77%)
		2. 결과·판정 신뢰도	400점 → **290점** (73%)
B	업무성과 (600점)	3. 시설·장비 성능	300점 → **160점** (53%)
		4. 그 밖의 제반사항	150점 → **175점** (117%)
		가·감점	-100 ~ +70 (5문항)

a. 개정된 평가 항목

19년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항목

분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기존 문항	기존 배점	배점
합 계				500	1,000
A 운영체계	소 계			180	400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60)	1.1 운영방침, 사업 및 업무표준의 수립	신설	-	40
		1.2 업무관리체계	신설	-	2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인적기준) (150)	2.1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신설	-	40
		2.2 관련 분야 자격증 및 경력보유 수준	신설	-	50
		2.3 직원 교육 · 훈련(내 · 외부)	4-1~4-5, 4-9	35	6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물적기준) (190)	3.1 고성능 장비 추가확보 및 유지, 관리의 적정성	신설	-	40
		3.2 법정 시설 및 장비 구비 및 성능	3-1~3-24	145	150
	가감점항목: A.4 정부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4.1 최근 2년이내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의 정부포상 수여 실적(대통령:5,총리:4,장관:3,이사장:2)	신설	-	+10
		4.2 최근 2년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처분개월수별 - 15점, 최대-80점)	신설	-	-15~ -80
		4.3 최근 2년이내 시정조치 ·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건별 - 2점, 최대 -20점)	신설	-	-2~ -20
	가감점항목: A5. 종합화	5.1 종합기술지원(컨소시엄 구성 포함, 동일기관 +5점, 타기관 +10점)	신설	-	+5~ +10

a. 개정된 평가 항목

19년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항목

분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기존 문항	기존 배점	배점
합 계				500	1,000
B 업무 성과	소 계			320	600
	B.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290)	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절차 수립 및 시행	2-1~2-2	35	50
		1.2 증상문진 및 기록관리	2-3~2-4	30	40
		1.3 청력검사	2-5~2-6	30	40
		1.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2-7~2-8	20	40
		1.5 판정, 검사항목 선정 및 의학적 소견 설명	2-9~2-12	70	100
		1.6 2차 검진 대상자 후속조치	신설	-	20
	B.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100)	2.1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폐활량검사능력	1-1~1-13	45	40
		2.2 청각학적 검사능력	1-14~1-17	20	20
		2.3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능력	1-20~1-21, 4-11	22.5	20
		2.4 분석정도관리 선택항목 참여 여부	1-19	2.5	20
	B.3 신규 발굴율(30)	3.1 특수건강진단 대상 신규 발굴율	신설	-	30
	B.4 고객 만족도 (120)	4.1 고객만족(수검자, 사업장) 및 서비스 향상활동	4-6~4-8, 4-13,4-14	20	50
		~~4.2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수~~	~~신설~~	~~-~~	~~50~~
		4.3 사후관리 대상 지도	2-13	15	20
	B.5 그 밖의 제반사항 (60)	5.1 문진결과 결과표 관리 및 결과표 송부	4-10,4-12	10	60
	가점 B.6 직업병 감시 체계	6.1 급성중독질환 발굴 및 조치 건수	신설	-	+50

a. 개정된 평가 항목 – 외부전문가 평가항목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항목 번호		항목	가중치	
기존	신규		기존	신규
2-1	B.1.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수립	3.5	30
2-2	B.1.1.2	사전조사 절차 실행여부	3.5	40
2-3	B.1.2.1	문진의 적정성	3.0	20
2-4	B.1.2.2	이학적 검사 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3.0	20
2-5	B.1.3.1	청력검사 불일치성	3.0	20
2-6	B.1.3.2	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	3.0	20
2-7	B.1.4.1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지침서 (생물학적 노출지표 시료채취 지침서)	2.0	20
2-8	B.1.4.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 적절성	2.0	20
2-9	B.1.5.1	건강진단 결과판정 방법의 적정성	3.5	25
2-10	B.1.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3.5	25
2-11	B.1.5.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3.5	25
2-12	B.1.5.4	검사항목의 적절성	3.5	25
2-13	B.4.2.1	사후관리 대상 지도 (유소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설명의 적절성)	3.0	20
Total			40/100	310/1000

b. 항목별 준비사항 – 지침 등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항목 번호	항목
B.1.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수립**
B.1.1.2	사전조사 절차 실행여부
B.1.2.1	문진의 적정성
B.1.2.2	이학적 검사 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B.1.3.1	청력검사 불일치성
B.1.3.2	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
B.1.4.1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지침서**
B.1.4.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 적절성
B.1.5.1	**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의 적정성**
B.1.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B.1.5.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B.1.5.4	검사항목의 적절성
B.4.2.1	사후관리 대상 지도

- 지침 (문서화, 숙지)
  - 사전조사 절차서
  - 생물학적 노출지표 시료채취 지침
  - 특수건강진단 결과 판정지침
  -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지침
  -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지침
- 대장
  -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결과 설명 대장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b. 항목별 준비사항 – 공문, 확인서 등

항목 번호	항목
B.1.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수립
B.1.1.2	사전조사 절차 실행여부
B.1.2.1	문진의 적정성
B.1.2.2	이학적 검사 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B.1.3.1	청력검사 불일치성
B.1.3.2	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
B.1.4.1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지침서
B.1.4.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 적절성
B.1.5.1	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의 적정성
B.1.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B.1.5.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B.1.5.4	검사항목의 적절성
B.4.2.1	사후관리 대상 지도

- 실시계획서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사업주(보건관리자)의 서명(확인)
- 청력검사
  - 검진안내: 청력검사가 소음 노출 중단 후 1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가 가능하다는 안내
  - 소음작업 최종노출시간과 실제 검사시간
  - 청력검사 결과지에는 해당 근로자의 자필 확인서명
- 생물학적 노출지표
  - 시료채취 시간, 수거시간, 시료종류, 특수검진 기관 또는 사업장 담당자(수거자) 및 근로자 서명 두 종류의 서명, 사업장 안내
- 2차 검사
  - 2차 검사를 여러차례 사업장이나 근로자에 안내한 객관적 근거

b. 항목별 준비사항 – 검진기록, 검사 결과 등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항목 번호	항목
B.1.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수립
B.1.1.2	사전조사 절차 실행여부
B.1.2.1	문진의 적정성
B.1.2.2	이학적 검사 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B.1.3.1	청력검사 불일치성
B.1.3.2	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
B.1.4.1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지침서
B.1.4.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 적절성
B.1.5.1	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의 적정성
B.1.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B.1.5.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B.1.5.4	검사항목의 적절성
B.4.2.1	사후관리 대상 지도

- 과거직력: 직종(작업내용), 기간
- 증상문항에 대하여 '심하다'라고 답변한 경우 의사와의 상담내용 (표적장기별)
- 작업 및 작업 중 취급하는 물질과 관련된 건강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한 경우 의사와의 상담내용이 기재
- 임상진찰을 시행해야 하는 표적기관(유해인자 관련)이 기재
  - 임상 진찰: 개별 장기별 기록
- 그 외 각종 검사 결과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c. 기타 – *평가 시행단계 관련 판정단계 하향조정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항목 번호	항목	
B.1.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수립	사전조사
B.1.1.2	사전조사 절차 실행여부	
B.1.5.4	검사항목의 적절성	
B.1.2.1	문진의 적정성	검진
B.1.2.2	이학적 검사 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B.1.3.1	청력검사 불일치성	
B.1.3.2	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	
B.1.4.1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지침서	
B.1.4.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 적절성	
B.1.5.1	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의 적정성	결과 판정 및 사후관리
B.1.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B.1.5.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B.4.2.1	사후관리 대상 지도	

- 평가항목 B.1.5. 1, 2, 3 은 평가항목 B.1. 2.1, 2.2, 3.1, 3.2, 4.2 과 관련하여 **하향조정 가능**

-> 기존 문구: 평가 항목 2.9, 2.10, 2.11은 2.3, 2.4, 2.5, 2.6, 2.8 항목과 관련하여 하향 조정 가능

건강진단 수행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결과 판정을 신뢰할 수 없음.

3. 각론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B.1.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수립

대한직업환경의학회

B.1.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수립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검대상자 선정 등 사전 조사절차 보유 여부	사전조사 절차가 적정한 경우	☐ 30
	사전조사 절차가 보통인 경우	☐ 18
	사전조사 절차가 미흡한 경우	☐ 6

○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대상업무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검기관 내부의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확립과 교육(훈련) 정도를 파악하여 평가에 반영

○ 특검기관 자체적으로 절차서를 작성하여 문서화[1]하여야 하며, 실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1) 문서화되었다는 것은 내부품의(결재)를 득하여 일련번호를 포함한 문서로 등록한 경우를 말함.

○ 동 항목 평가시에 특검기관에 소속된 모든 특수건강진단 의사에 대하여 평가

○ 평가기준

- 30점 : 사전조사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으며 담당자가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음
- 18점 : 사전조사 검토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으나 담당자가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음
- 6점 : 사전조사 검토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음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B.1.1.1 사전조사 절차 수립 - 문서화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문서화 : ①내부품의(결재)를 득하여 ②일련번호를 포함한 문서로 등록한 경우를 말함

① **내부품의(결재)를 득하여야 함**

- 최고결재권자(병원장)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함. 단, 기관의 위임전결규정 등에 특수건강진단에 업무에 대하여 부서장(소장) 등 차상위권자의 결재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인정 가능

※ 위임전결규정이 없는 경우, 최고결재권자(병원장)에게 특검업무에 대하여 부서장 등 차상위자의 결재권을 인정하는 내부결재가 있는 경우 문서화 인정 ('17년 신규 적용)

② **일련번호를 포함한 문서로 등록되어야 함**

- 문서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기관의 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문서가 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 시스템 또는 문서기록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문서기록대장(전자문서 시스템 포함)은 해당 문서의 일련번호와 등록날짜 등이 정확하여야 함

※ 문서화가 안되어있는 경우 문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C로 평가

※ 평가기간 ('17.4.30까지) 문서화가 된 경우는 문서화 인정

※ 실행여부는 평가항목별로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별 평가기간 동안 절반이상 실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평가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실시

B.1.1.1 사전조사 절차 수립 – 적정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항목	세부항목	수준	확인
표준 절차	사전조사자(실무자)에 대한 업무 분장	필수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및 대상자 선정기준	필수	
	보건관리자료(측정결과, MSDS, 검진결과) 확보절차	필수	
	단시간작업 및 임시작업에 해당하여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파악 절차	필수	
	소음 외에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한 물리적 유해인자(진동, 전리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파악 절차	필수	
	누락된 유해인자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	필수	
	협력업체, 파견직 등 누락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	필수	
	관련 서식(사업장 점검표, 실시계획서)	필수	
	문서화	필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필수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에 대응하는 절차 수립	권장	
비표준 상황	내원, 긴급 검진	필수	
	신규사업장	필수	
	보건관리자료 미비	필수	
	건설업	필수	
	연구실(실험실)	권장	
담당자	절차 숙지	필수	

14가지 필수 수준 중
80%(11.2) 이상
확인 되어야 적정(만점)

실무지침,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주기적 업데이트 필요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B.1.1.2 사전조사 절차 실행여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B.1.1.2	사전조사 절차 실행여부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행과정의 적절성 파악 (B.1.1.1 실행여부)	사전조사 실행과정이 적정한 경우	☐ 40
	사전조사 실행과정이 보통인 경우	☐ 24
	사전조사 실행과정이 미흡한 경우	☐ 8

○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에 관한 기관내부의 표준운영절차가 현장에서 유효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

○ 평가기준

- 40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80% 이상이 적정한 경우
- 24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50%이상~80% 미만이 적정한 경우
- 8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50% 미만이 적정한 경우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B.1.1.2 사전조사 절차 실행여부

1. 표본 선정
   - **사업장 중에서 50인 이상 사업장 10개소와 50인 미만 사업장 1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함.**
2. 의사 소통 기록
   - 자료 요청, 명단 요청, 계획서 확인 요청
3. 실시 계획서 작성
   - 지침의 항목 확인 – 절차와 상황에 맞는지
4. 확인 – 특수건강진단 전문의 AND 사업주(보건관리자)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B.1.1.2 사전조사 절차 실행여부

항목	세부항목	수준	확인
보건 관리 자료	모든 공정에 대한 과년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검토하였는가?	필수	○
	과년도 **특수건강진단결과표**를 검토하였는가?	필수	○
	최근 업데이트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였는가?	권장	×
	위험성평가 보고서가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권장	×
	안전보건진단 보고서가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권장	×
	화학물질사용대장을 확인하였는가?	권장	×
	작업일지를 확인하였는가?	권장	×
사업 주 측 정보	단시간작업 및 임시작업에 해당하여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있는지 물어보았는가?	필수	○
	소음 외에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한 **물리적 유해인자**(진동, 전리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가 있는지 물어보았는가?	필수	○
	작업환경측정 이후로 '시설/장비/유해물질'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보았는가?	필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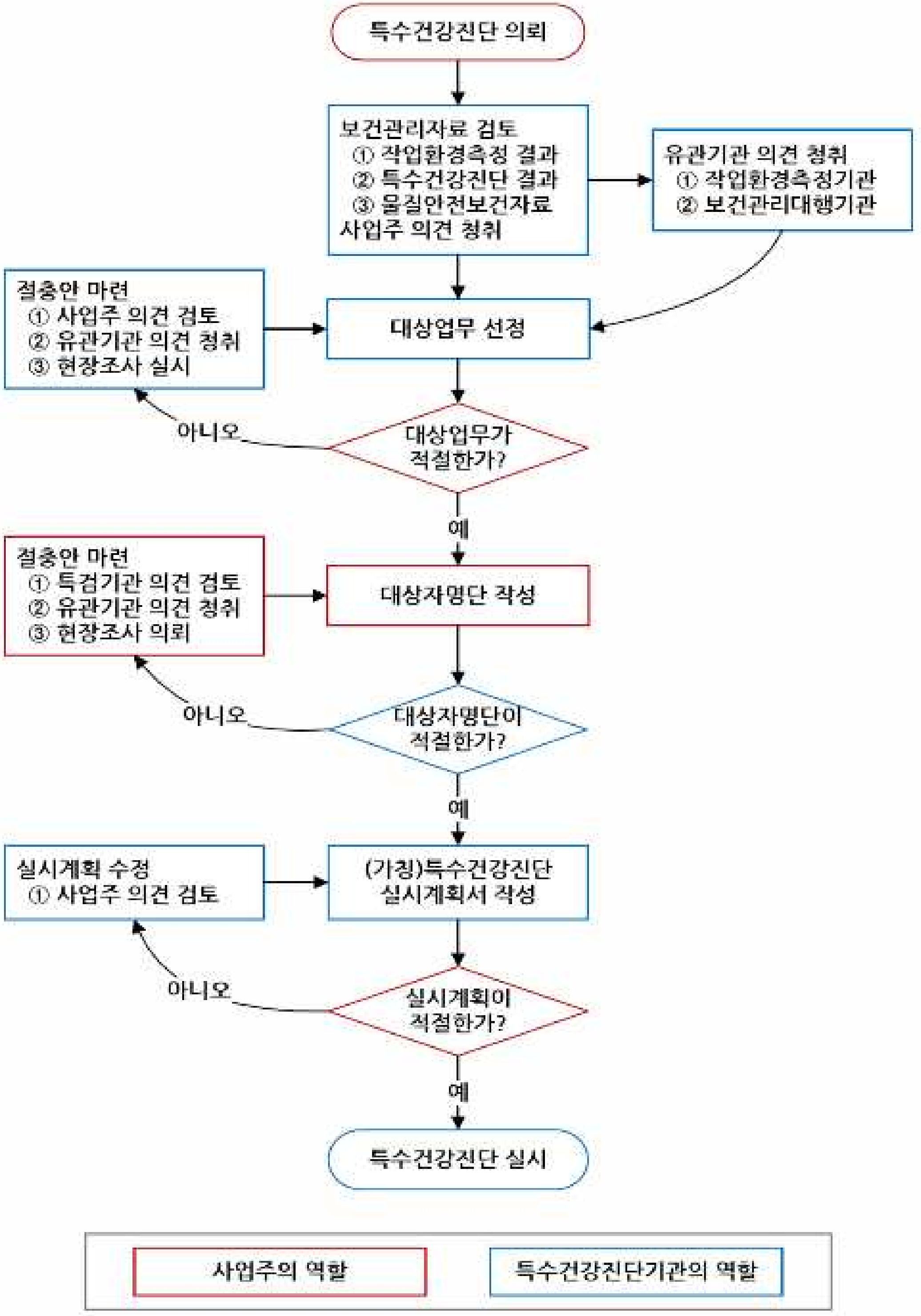

B.1.1.2 사전조사 절차 실행여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서 (예시)

1. 일반사항

사업장명		주요생산품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2. 건강진단 일정

일시	
장소	

3. 대상업무(유해인자) 요약

부서/공정	단위작업	유해인자	측정결과	대상자 수	비 고

4. 과년도 특수건강진단결과 요약

구 분	세부 사항 (해당 공정, 유해인자, 표적장기 등)
D_1	
C_1	
D_2	

5. 대상자명단

부서/공정	단위작업	성명	성별	연령	유해인자	측정결과	검진결과	건강진단 동시실시

6. 확인 서명

간호사	특수건강진단의사	사업주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서(예시)

201X년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명단

(특수건강진단기관 송부용)

작성자 : (주) □□

작성일자: 201X.XX.XX

부서/공정	단위작업	유해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혹은 생년월일, 성별)	건강진단 동시실시
가	A	a	○○○	******-*******	○
가	A	a	△△△	******-*******	○
가	B	b, c	□□□	******-*******	특수
마	H	없음	◇◇◇	******-*******	일반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명단 작성 예시(사업주 송부용)

부서/공정	단위작업 (필요시)	성명	성별	연령	유해인자	작업환경 측정결과 (참고값)[1]	(이전) 특수건강 진단결과	건강진단 동시실시 (필요시)
가	A	○○○	여	25	a	불검출	A	○
가	A	△△△	남	40	a	불검출	-	○
가	B	□□□	여	50	b c	초과 근접	C_1 (호흡기계)	특수
마	H	◇◇◇	남	30	-		-	일반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서의 대상자명단 작성 예시(건강진단기관용)

B.1.2.1 문진의 적절성

B.1.2.1	문진의 적정성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문진표, 개인표 등을 통한 과거 직력, 문진, 시진 검사 여부 확인	문진과정이 적정한 경우	☐ 20
	문진과정이 보통인 경우	☐ 12
	문진과정이 미흡한 경우	☐ 4

○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료진이 해당 근로자(수검자)의 작업 내용 및 환경에 대한 이해와 진찰(문진) 과정에서 근로자(수검자)와 의사와의 의사소통 등 문진부분을 평가

○ 평가방법

- 적정 : 건강진단 개인표에 과거직업력, 문진이 모두 기입되어 있으며 문진표가 작성되어 있고, 문진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동 내용을 파악 또는 파악된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있음

○ 평가기준

- 20점 : 조사 대상 사업장 검진자의 80% 이상이 적정한 경우
- 12점 : 조사 대상 사업장 검진자의 50%이상~ 80% 미만이 적정한 경우
- 4점 : 조사 대상 사업장 검진자의 50% 미만이 작정한 경우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B.1.2.1 문진의 적절성

1. 표본 선정
   - **평가문항 B.1.1.2에 선정된 사업장 중 40명(Chart)**
2. 평가 내용
   1. **직업력** – 현 사업장 및 현사업장 이전 직업력
   2. **작업환경 측정 결과** 확인 – 인쇄되거나 있었다는 증빙 필요
   3. 표적장기별 문진표 **심하다** -> 상담
   4. 작업과 관련한 건강문제 답변자 체크 경우 – 상담 필요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B.1.2.1 문진의 적절성

직업력

(별지 제5호서식) [□ 배치전 □ 특수 □ 수시 □ 임시]

건 강 진 단 개 인 표

(앞쪽)

유해인자 :

주민등록번호		이 름		나 이	만 세	성 별		사원번호	
근로자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체 명				업 종					
현작업부서		현작업내용				지방사무소			
입사년월일		현직전입일		폭로기간		1일폭로시간			

과거직력	작업 공정명	근무년수	기 간	문진	과거병력		진찰	신경계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진동장애 등
					가 족 력			
					업무기인성 흡연,음주			
취 급 물 질								
현재증상								

항목	신장 (Cm)	체중 (Kg)	혈압 (mmHg) 최고	혈압 (mmHg) 최저	흉부방사선검사(촬영번호 번) 판독의사면허번호( )	
참고치			139이하	89이하		
( )년도						
( )년도						

B.1.2.1 문진의 적절성

표적장기별 문진표 – 심하다

신체부위	증상문항	증상: 심하다	증상: 약간있다	증상: 없다	신체부위	증상문항	증상: 심하다	증상: 약간있다	증상: 없다
심혈관/호흡기	작업 중 가슴이 두근거린다				척추/사지	팔, 다리, 어깨가 쑤시거나 아프다			
	일을 할 때 기침이 나고, 숨이 차다					손, 발이 떨리거나 힘이 없다			
	가슴이 답답하다					손이나 발의 감각이 둔해졌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래가 나오거나 기침을 한다					추우면 손가락이 하얗게 된다			
	쉬고 난 다음날 작업장에 나가면 기침을 한다					허리가 아프다			

그 외 다른 증상이 있는 경우, 아래의 칸에 기술해 주십시오.

* 작업 중에 건강상의 문제(몸의 이상)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작업 중 취급하는 물질로 인해 건강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 예 □ 아니오

작업 관련 건강문제

의사소견	

B.1.2.2	이학적 검사 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문진표 확인 등을 통한 이학적 검사 실시유무와 시행의 적절성 평가	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기록이 양호한 경우	☐ 20
	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기록이 보통인 경우	☐ 12
	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기록이 미흡한 경우	☐ 4

○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료진이 해당 근로자(수검자)의 작업 내용과 환경에 적절한 이학적 검사수준 평가

○ 평가방법 : 유해인자별로 이경 검사(좌,우), 진동 노출군에 대한 손톱압박검사 통각, 진동각, 악력, 호흡기 및 순환기 고위험군에 대한 청진, 피부질환에 대한 시진, 비강 및 인두 검사, 레이노 현상진찰, 안과 진찰 등에 대한 기록확인

○ 평가기준

- 20점 : 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기록이 80% 이상이 있는 경우
- 12점 : 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기록이 50% 이상~80%미만이 있는 경우
- 4점 : 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기록이 50% 미만이 있는 경우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B.1.2.2 이학적 검사 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1. 표본 선정
    - **평가문항 B.1.1.2에 선정된 사업장 중 40명(Chart)**
2. 평가 내용
    - 동 평가문항은 증상문진표와 관련해서 확인하는 문항으로서
    - 문진표 기록이 **표적장기**에 해당하는 증상 호소내용이 "**심하다**" 이상으로 표시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평가
    - 유해인자별로 이학적검사 실시 여부 (이경검사(좌,우), 진동노출군에 대한 손톱 압박검사통각, 진동각, 악력, 호흡기 및 순환기 고 위험군에 대한 청진, 피부질환 대한 시진, 비강 및 인두 검사, 레이노 현상 진찰, 안과 진찰 등)
    - 이학적 검사의 결과에 이상이 있다면, 수검자가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B.1.3.1 청력검사 불일치성

B.1.3.1	청력검사 불일치성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청력검사결과의 불일치 여부 확인	청력검사결과의 불일치 여부가 양호한 경우	☐ 20
	청력검사결과의 불일치 여부가 보통인 경우	☐ 12
	청력검사결과의 불일치 여부가 미흡한 경우	☐ 4

○ 평가목적 : 직업성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인 소음성 난청을 표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 항목인 청력검사의 신뢰성을 측정함으로써, 해당 검진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의 전체적인 질(수준) 평가

○ 평가방법

– 동일 기관별로 소음에 대한 2차 검진항목을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 과거 2회 이상 청력 특수건강진단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불일치성 조사

○ 평가기준

– 20점 :조사 대상 근로자의 10% 미만 불일치

– 12점 : 조사 대상 근로자의 10%이상 ~ 20% 미만 불일치

– 4점 : 조사 대상 근로자의 20% 이상 불일치

* 불일치 : 전체 주파수별 청력검사결과 중에서 단 한 개라도 10 dB 이상 좋아진 경우.

B.1.3.1 청력검사 불일치성

1. 표본 선정
   - **소음과 관련된 2차 특수검진(정밀청력검사)을 실시한 사업장 4개소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사업장 당 5명씩, 총 20명의 근로자 선정)**
2. 평가 내용
   - 최근 3년 자료 중 연속되는 가장 최근 2회 측정값의 결과상 불일치성을 조사함.
   - 평가대상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항목을 평가하지 않는다.
   - 좌우를 막론하고 전체 주파수(500Hz~6,000Hz)별 청력검사결과 중에서 단 한개라도 10dB 이상 좋아진 경우 가 있으면, '불일치'하는 사례로 평가함. 하지만 좋아진 경우라도 합리적 근거(예, 혼합성 난청 등)가 있으면 '일치'하는 사례로 평가 가능

B.1.3.2 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

B.1.3.2	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 확인	청력검사 시기 및 안내가 모두 적절한 경우	☐ 20
	청력검사 시기 및 안내가 보통인 경우	☐ 12
	청력검사 시기 및 안내가 미흡한 경우	☐ 4

○ 평가목적 : 직업성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인 소음성 난청을 표적으로 한 특수건강진단 항목인 청력검사를 위한 준비과정과 실제 검사시기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검진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의 질(수준) 평가

○ 평가방법

- 청력검사가 소음 노출 중단 후 1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해당 사업장(부서)에 통보하는지를 확인(안내 자료, 문서 등으로 확인)

○ 평가기준

- 20점 : 조사 대상 2개 사업장(부서) 모두 적절
- 12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 중 1개소만 적절
- 4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 모두 부적절

※ 적절의 의미 : 안내 및 검사시기가 모두 적정한 경우(검사시기나 안내중 1개만 적절한 경우에는 부적절한 경우로 평가)

B.1.3.2 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

1. 표본 선정
   - **대상사업장은 '2.5 항목'의 사업장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정밀청력검사를 시행한 사업장 2개소를 선정**
   - **해당 사업장 청력검사 결과지**
2. 평가 내용
   - 청력검사는 '소음 노출중단 후 14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실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문서형식으로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는지를 확인하되
   - 건강검진업무 담당자에게 '문서로써 적절한 안내를 받았는지' 유선을 통하여 확인 ※ 공문을 통하여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 근로자에게는 '소음격리 14시간 이후에 실제로 검사를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함. (사업장 소속 특검기관)
   - 청력검사 결과지에는 해당 근로자의 자필 확인서명까지 있어야 함

B.1.4.1 생물학적 노출지표 시료채취 검사 지침서

B.1.4.1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지침서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시료채취를 위한 지침서 보유 여부	생물학적 노출지표에 대한 지침이 적정한 경우	☐ 20
	생물학적 노출지표에 대한 지침이 보통인 경우	☐ 12
	생물학적 노출지표에 대한 지침이 미흡한 경우	☐ 4

○ 평가목적 : 생물학적 노출지표는 근로자의 유해물질 노출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도구이나 생물학적 노출지표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시기, 방법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는 바, 특수건강진단의 질(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침 보유여부 확인

○ 특검기관 자체적으로 지침을 작성하여 문서화 하여야 하며, 실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평가기준

- 20점 : 내부지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12점 : 공단 지침 등 외부기관의 지침이 있고 내부지침은 없는 경우
- 4점 : 지침서가 없는 경우

○ 지침서 : 지침서에는 시료채취에 대한 업무분장, 채취시기 및 방법, 수거 방법, 보관방법, 의뢰 방법(의뢰항목이 있는 경우),사업장 안내 사항 등이 포함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1. 지침 문서화
2. 숙지 여부
3. 평가 서류

- 지침서에는 시료채취에 대한 업무분장, 채취시기 및 방법, 수거 방법, 보관방법, 의뢰 방법(의뢰항목이 있는 경우), 사업장 안내 사항, 관련 서식 등이 포함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B.1.4.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 적절성

B.1.4.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 적절성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요원이 사업장 방문 후 직접시료 채취여부 및 채취시간 적정여부 확인	생물학적 검사시료 채취가 적절한 경우	□ 20
	생물학적 검사시료 채취가 보통인 경우	□ 12
	생물학적 검사시료 채취가 부적절한 경우	□ 4

○ 평가목적 : 생물학적 노출지표 평가를 위한 시료채취방법을 확인하여 특수건강진단의 전체적인 질(수준) 평가

○ 평가기준

- 20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기록이 모두 적정하며, 유선으로 통화한 2개 사업장 모두 적정한 방법으로 시료 채취를 실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12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 중 일부 기록이 누락되어 있거나, 유선으로 통화한 1개 사업장만 적정한 방법으로 시료 채취를 실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4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시료채취 기록을 확인할 수 없거나, 유선으로 통화한 사업장 모두 시료 채취 방법이 부적정한 경우

B.1.4.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 적절성

1. 표본 선정
   - **최근 2년 동안에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를 실시한 사업장 중에서 10개소를 선정 (10개소의 방법과 기록(대장))**
   - **사업장 전화 확인 2개소**
2. 평가 서류
   1. 조사 대상인 10개 사업장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관련 **기록**에서 시료채취 시간, 수거시간, 시료종류, 특수검진 기관 또는 사업장 담당자 및 근로자 서명 등을 확인

B.1.5.1 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의 적정성

B.1.5.1	건강진단 결과판정 방법의 적정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건강진단 결과 판정방법의 적정성	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이 적정함	☐ 25
	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이 보통임	☐ 15
	건강진단결과 판정 방법이 미흡함	☐ 5

○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결과판정의 프로세스가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규정된 판정지침에 따른 실시여부 확인

○ 특검기관 자체적으로 지침을 작성하여 문서화 하여야 하며, 실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평가기준

- 25점 :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근로자수)가 5% 미만
- 15점 :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근로자수)가 5% 이상~10%미만
- 5점 :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근로자수)가 10% 이상

○ 적합 : 결과판정에 임상 참고치, 이상징후, 노출추정, 관찰, 생물학적 노출지표, 문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모두 활용해 판정한 경우

○ 지침서 : 임상참고치, 이상징후, 노출추정,관찰, 생물학적 노출지표 결과, 문진,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고려한 일련의 process로 구성(공단의 실무지침이 아님)

B.1.5.1 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의 적정성

1. 문서화
2. 표본 선정
   - **평가문항 B.1.1.2(사전조사 시행)에서 선정된 사업장에서 A판정자(10명), C판정자(15명), D판정자(15명) 등으로 40명을 선정하여**
3. 평가 서류
   1. 기관이 작성한 건강진단 검진 및 판정 지침서
   2. 건강진단 결과 판정에 쓰인 의사의 진찰 기록
   3. 작업환경측정자료, 생물학적 노출 자료, 임상결과 등 건강진단 관련 자료
   4. 평가항목 B.1.5. 1, 2, 3 은 평가항목 B.1. 2.1, 2.2, 3.1, 3.2, 4.2 과 관련하여 하향 조정 가능

B.1.5.1 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의 적정성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다음의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

- 징후가 있음에도 A판정시 (※징후의 정의는 건강진단기관의 자체지침 참조)
- 장해 혹은 질병이 있음에도 A 또는 C 판정시 (※ 장해 혹은 질병의 정의는 건강진단기관의 자체 지침 참조
- **2차 건강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U 판정이 되어야하나, 적합한 사유가 기재되지 않고 1차 건강진단만으로 판정된 경우 – 전문의 평가단 논의 예정**

※ 징후, 장해 및 질병의 정의는 건강진단기관의 자체 세부판정지침 참조

- 징후, 장해, 질병으로 보이는 근거(문진, 신체검사 결과, 임상결과 등)는 최소 1가지가 의무기록으로 기록되어야 인정. 징후, 장해, 질병으로 보이는 근거(문진, 신체 검사 결과, 임상결과 등)를 발견하였음에도 판정에 해당근거가 반영되지 않은 정황이 나타날 경우, 판정을 한 건강진단 의사가 해당 근거를 배제한 의도를 청취

B.1.5.1 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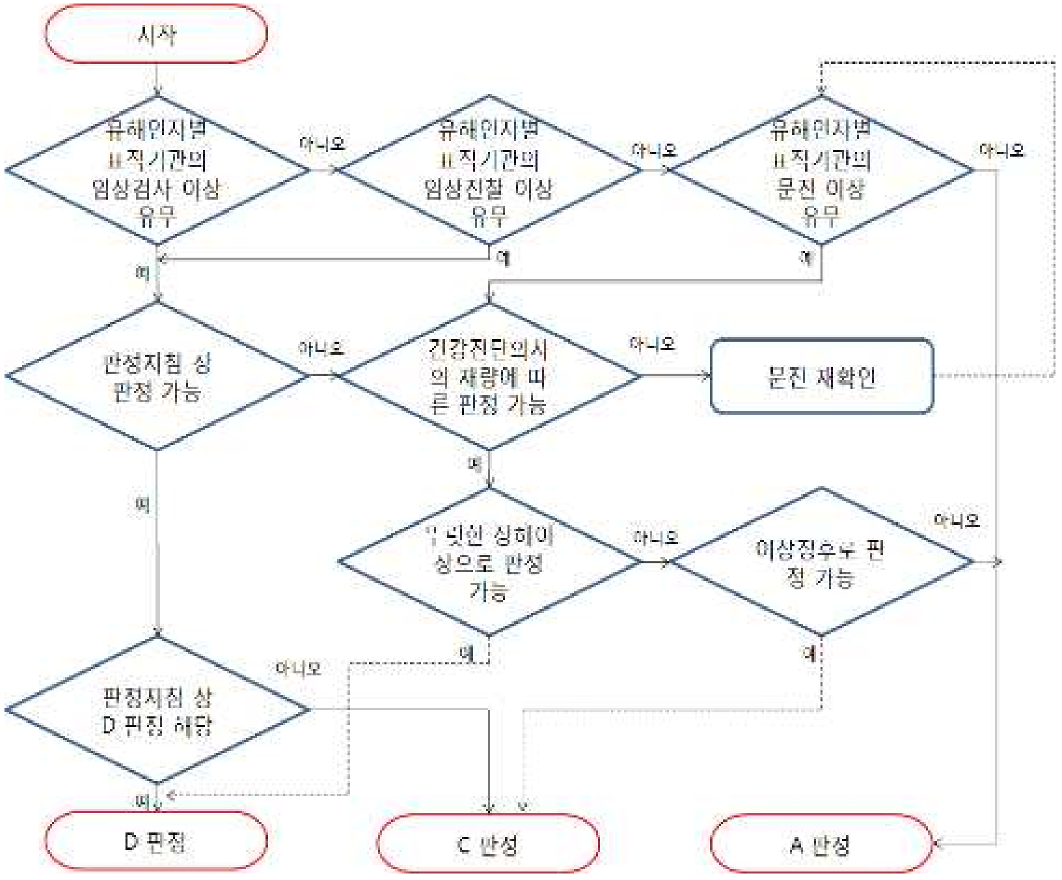

항목	세부항목	수준
구비 서류	판정 대상에 대한 문진 결과 및 문진표를 확보하고 있는가?	필수
	판정 대상에 대한 임상 진찰 결과 및 임상 검사 결과를 확보하고 있는가?	필수
	판정을 위한 건강진단기관 <u>자체 판정지침</u> 을 보유하고 있는가?	필수
	자체 판정지침은 찾기 손쉬운 곳에 보관하고 있는가?	권장
	판정지침 <u>예외 적용 사유</u> 를 적은 사유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필수
	판정지침은 수시로 <u>판올림</u>되고 있는가?	권장
판정 행위	자체 판정지침에 <u>반하는 판정</u> 결과가 있는가? 그에 따른 사유서는 <u>논리</u> 정연하게 작성되었는가?	필수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B.1.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대한직업환경의학회

B.1.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평가(C1,C2,C_N,D1,D2,D_N) 방법의 적정성 여부	업무관련성 평가(판정)가 양호함	☐ 25
	업무관련성 평가(판정)가 보통임	☐ 15
	업무 관련성 평가(판정)가 미흡함	☐ 5

○ 평가목적 :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의 결정이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규정된 판정지침에 따른 실시여부 확인

○ 특검기관 자체적으로 지침을 작성하여 문서화 하여야 하며, 실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평가기준

- 25점 :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근로자수)가 5% 미만
- 15점 :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근로자수)가 5% 이상~10% 미만
- 5점 :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근로자수)가 10% 이상

○ 적합 :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업 행태 관찰, 문진(직업력, 노출기간, 공정, 취급방법 등 작업환경 부분) 결과를 모두 활용해 판정한 경우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B.1.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1. 문서화
2. 표본 선정
   - **평가문항 B.1.1.2(사전조사 시행)에서 선정된 사업장에서 A판정자(10명), C판정자(15명), D판정자(15명) 등으로 40명을 선정하여**
3. 평가 서류
   1. 기관이 작성한 건강진단 검진 및 판정 지침서
   2. 노출 추정 관련 자료 구비 및 확인
   3. 평가항목 B.1.5. 1, 2, 3 은 평가항목 B.1. 2.1, 2.2, 3.1, 3.2, 4.2 과 관련하여 하향 조정 가능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B.1.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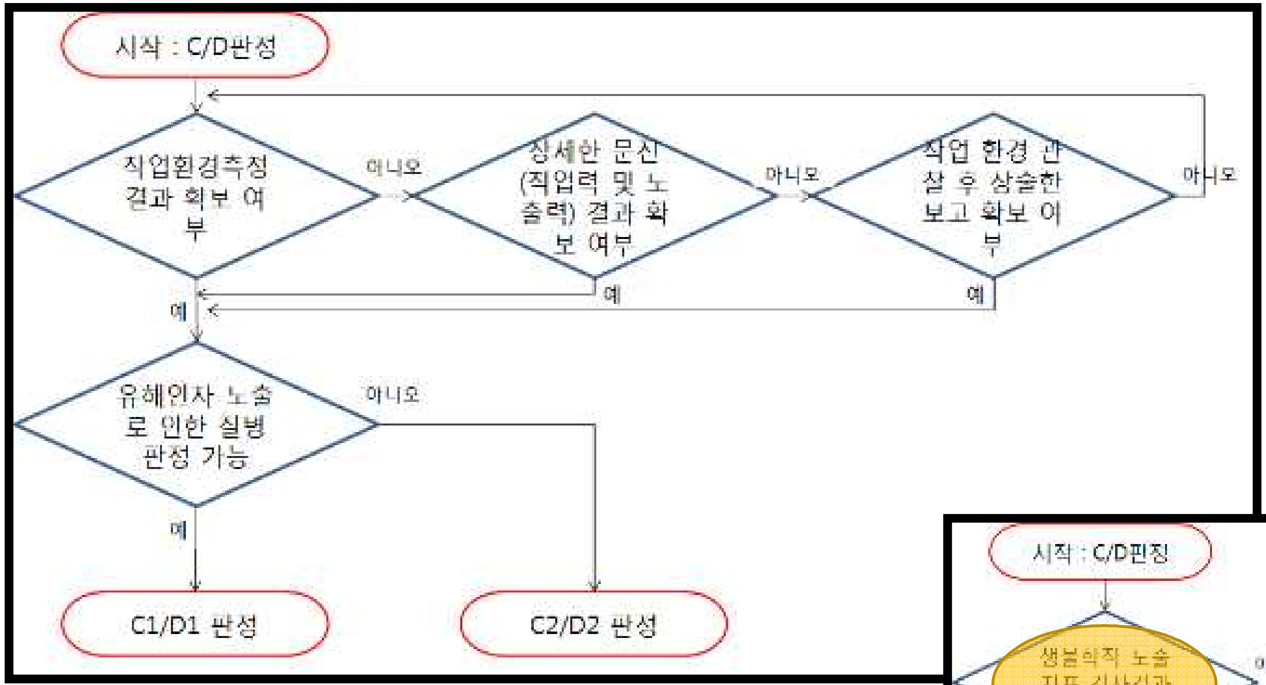

C_1/D_1 판정의 논리적 순서도 (생물학적 노출지표가 없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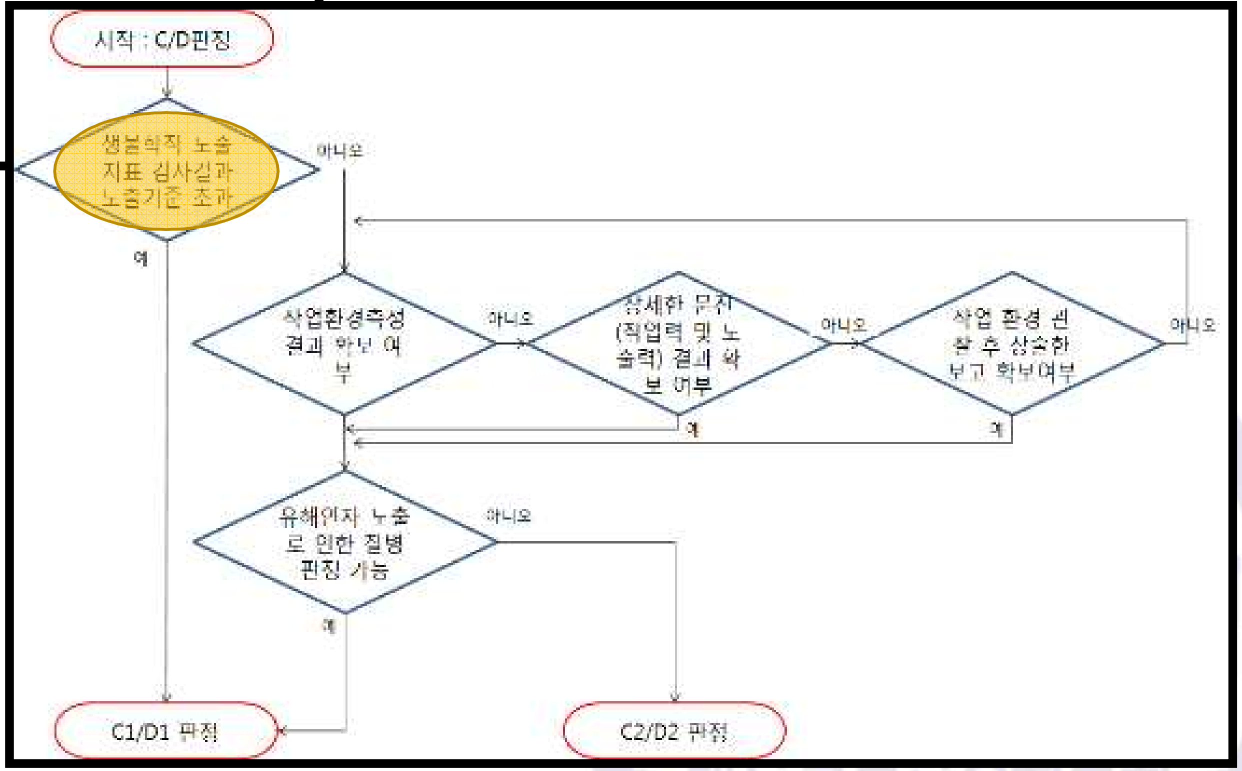

C_1/D_1 판정의 논리적 순서도 (생물학적 노출지표가 있을 경우)

B.1.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항목	세부항목	수준	확인	비고
구비 서류	판정 대상에 대한 최근 2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서를 확보하고 있는가?	권장	○	
	판정 대상에 대한 **문진(직업력, 작업환경** 부분 등: 노출기간, 공정, 취급방법)결과를 확보하고 있는가?	권장1)	○	
	판정을 위한 작업 행태 관찰 결과를 보유하고 있는가?	권장1)	×	
판정 행위	**생물학적 노출 지표 검사 결과** 노출 기준 초과에도 정상으로 판정한 사례는 없는가?	필수	○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B.1.5.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대한직업환경의학회

B.1.5.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업무적합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	업무 적합성 평가가 양호함	□ 25
	업무 적합성 평가가 보통임	□ 15
	업무 적합성 평가가 미흡함	□ 5

○ 평가목적 :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결정이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규정된 판정지침에 따른 실시여부 확인

○ 특검기관 자체적으로 지침을 작성하여 문서화하여야 하며, 실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평가기준

- 25점 : 업무적합성 평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 (적정성 80%이상)
- 15점 : 업무적합성 평가에 대한 근거 자료가 다소 부족함(적정성 50% 이상~80%미만)
- 5점 : 업무적합성 평가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적정성 50%미만)

○ 지침서 : 기관에서 보유한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서를 확인하여 해당지침에 맞도록 수행하는지 확인(주요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별 판정기준을 별도로 작성가능)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B.1.5.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1. 문서화
2. 표본 선정
   - **평가문항 B.1.1.2(사전조사 시행)에서 선정된 사업장에서 A판정자(10명), C판정자(15명), D판정자(15명) 등으로 40명을 선정하여**
3. 평가 서류
   1. 기관이 작성한 건강진단 검진 및 판정 지침서
   2. 평가항목 B.1.5. 1, 2, 3 은 평가항목 B.1. 2.1, 2.2, 3.1, 3.2, 4.2 과 관련하여 하향 조정 가능

B.1.5.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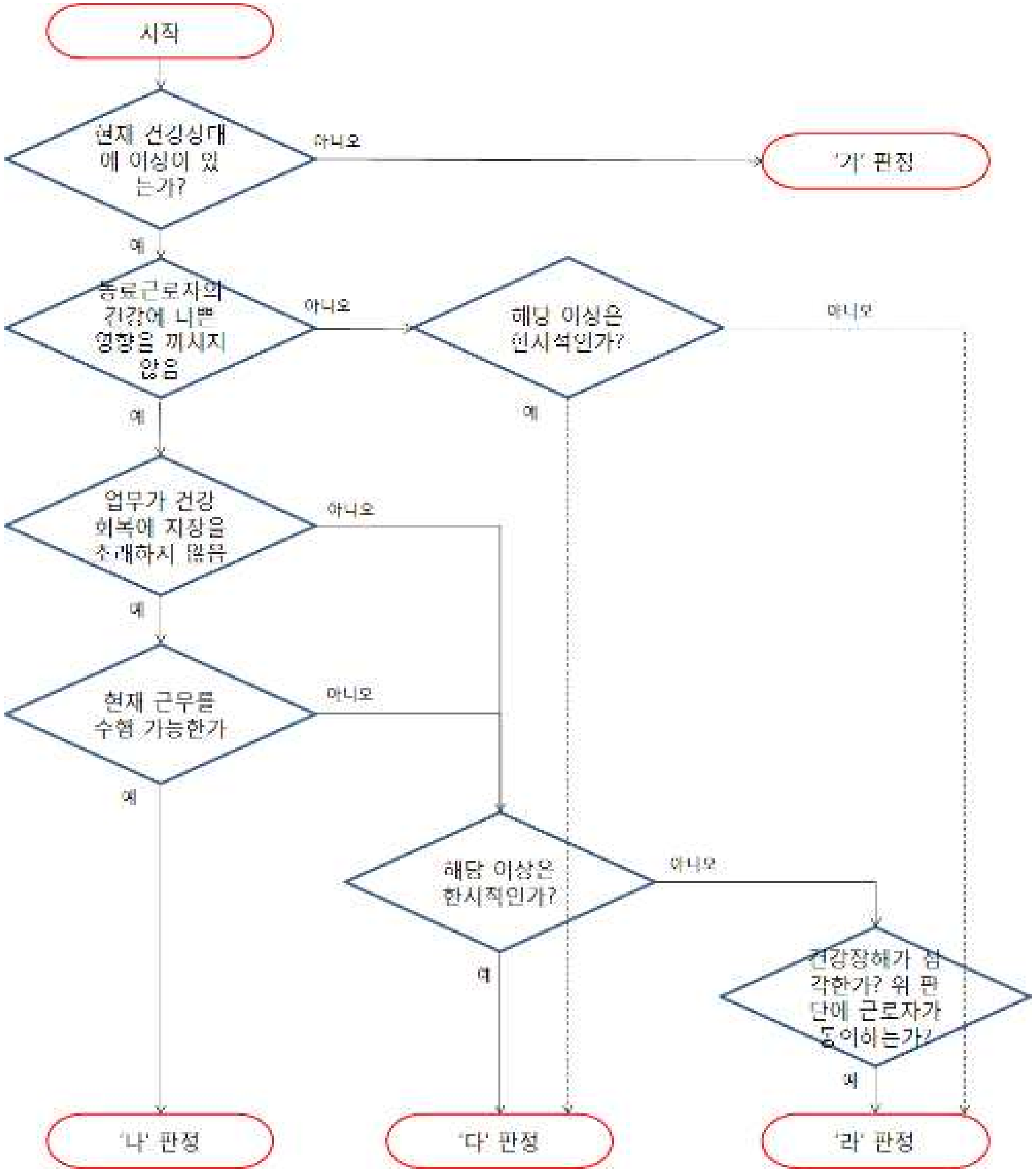

항목	세부항목	수준
구비서류	판정 대상에 대한 건강관리구분 평가 결과를 확보하고 있는가?	필수
	판정 대상에 대한 해당 건강장해에 대한 과거 의사의 소견서 등 의무기록(영구적 장해 시)결과를 확보하고 있는가?	권장
	판정을 위한 작업 행태 관찰 결과를 보유하고 있는가?	권장
	판정을 위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유하고 있는가?	권장
	판정을 위한 현장 사진, 동영상 등 근거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권장
판정행위	동료근로자에 대한 건강영향 유무는 판단하였는가?	필수
	근로자에 건강 악화 가능성 은 판단하였는가?	필수
	근로자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 는 판단하였는가?	필수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B.1.5.4 검사항목의 적절성

대한직업환경의학회

B.1.5.4	검사항목의 적절성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검사항목의 적절성	검사항목이 선정이 적정한 경우	☐ 25
	검사항목이 선정이 보통인 경우	☐ 15
	검사항목이 선정이 미흡한 경우	☐ 5

○ 평가목적 : 1차 검사항목은 모두 필수검사항목이고, 2차 검사항목중에서는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시 실시하는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필수검사항목이나 적정한 이유 없이 임의로 필수검사항목을 누락시키는 바, 적정실시여부 확인

○ 평가기준

- 25점 : 필수 검사항목을 모두 실시하고, 미실시한 경우에는 미실시 사유가 모두 기록
- 15점 : 필수 검사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미실시 사유 기록이 80% 이상~100%미만 작성
- 5점 : 필수 검사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미실시 사유 기록이 80% 미만 작성

○ 검사항목

- 1차 검사항목은 모두 필수, 2차 검사항목 중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시 실시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필수 검사임(이학적 검사는 문진항목에서 평가)

1. 표본 선정
   - **평가문항 B.1.1.2(사전조사 시행)에서 선정된 사업장에서 A판정자(10명), C판정자(15명), D판정자(15명) 등으로 40명을 선정하여**
2. 평가 내용 –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참조 / 일괄 미실시 확인

항목	세부항목	수준
검사 항목 선정	표적기관별 '1차 검사항목'이 모두 포함되었는가?	필수
	표적기관별 **'2차 검사항목'** 중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을 확인하였는가?	필수
	표적기관별 '2차 검사항목' 중 필요시 실시하는 '별표2' 이외의 항목 중에서, 제외한 항목이 있는가?	필수
	'별표2' 이외의 제외항목에 대하여 그 사유를 개인표 혹은 기록지에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필수

B.4.2.1 사후관리 대상 지도 유소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설명의 적절성

B.4.2.1	사후관리 대상 지도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설명의 적절성 여부 확인	유소견자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적정한 경우	□ 20
	유소견자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보통인 경우	□ 12
	유소견자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	□ 4

○ 평가목적 : 특수검진에서 전체 유소견자들(D1, D2, DN)을 대상으로 기관으로 내원케 하거나 의사나 간호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설명하는 것은 사후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바,

유소견자들에게 의학적 소견,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하여 평가

○ 평가기준

- 20점 : 유소견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80% 이상
- 12점 : 유소견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50%이상~80% 미만
- 4점 : 유소견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50% 미만

※ 화학적 인자에 대한 직업병 요관찰자(C1)의 사후관리 지도가 해당자의 50% 이상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SOEM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B.4.2.1 사후관리 대상 지도 유소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설명의 적절성

1. 표본 선정
   - **특수검진에서 유소견자(D1, D2, DN 판정자) 10명을 선정(5개 사업장 이상) 하여 확인**
2. 평가 내용
   1. 사후관리 vs 결과설명
   2. 직접 설명 – 특검기관에서,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전화로
   3. 누가? – 의사, 간호사 (업무 분장 담당자)'
   4. 객관적 증빙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사전적 용어의 정의)

지도 :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끄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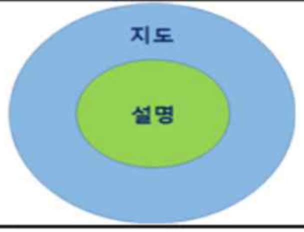
설명 :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B.4.2.1 사후관리 대상 지도 유소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설명의 적절성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제105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수

제3장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제20조(사후관리 조치) ①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③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2항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결과 설명 vs 사후관리

시행규칙 vs 고시

검진기관 vs 사업주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988

B.4.2.1 사후관리 대상 지도 유소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설명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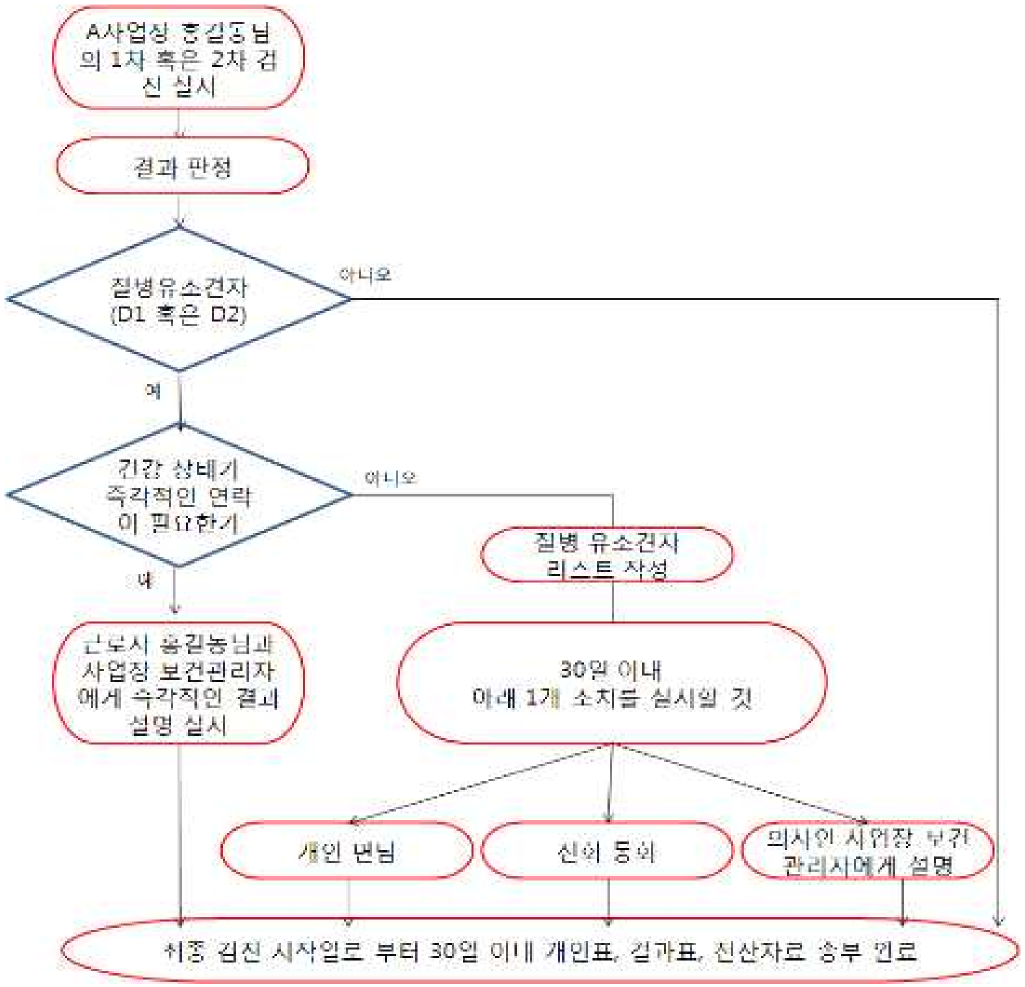

항목	세부항목	수준
사후관리방법	특수건강진단결과에서 '질병 유소견자들'의 '업무수행 적합여부'나 '사후관리조치내용' 등이 제대로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필수
	특수건강진단결과가 적법한 기간(건강진단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되었는가?	필수
	사업장 내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있다면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의사'에게 제공하였는가?	필수
	사업장 내 '의사'가 없다면, 특수건강진단 담당 '의사 혹은 간호사'가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혹은 유소견자에게 내원을 요청하여, 적절한 사후관리 정보(내용)를 직접 설명하였는가?	필수
	'사후관리' 내용 및 결과가, '사업장별 기록'으로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가?	필수

항목	세부항목	수준
구비서류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결과 설명 대장을 보유하고 있는가	필수
결과설명행위	30일을 초과하여 결과가 통보되고 있는가	필수
	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과를 설명하였는가	필수

감사합니다.

신경석

i.medicine@hotmail.com

010-8887-1565